

행정대집행 회수물품(집기물건 등) 및 보관 장소 공시송달 공고

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(행위허가) 제1항제1호를 위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(대집행의 절차)에 의거 실시한 행정대집행 결과, 불법시설물 내에서 강제 회수된 물품(집기물건 등)에 대하여 「자연공원법」 제24조의2(방치된 물건등의 제거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(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)에 의거 회수물품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공고내용: 행정대집행 회수물품(집기물건 등) 및 보관 장소 공고
2. 공고기간: 2021. 8. 3.(화) ~ 9. 2.(목) [1개월 간]
3. 물품내역: 집기물건 등 1식
4. 회수장소: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-1 일원 불법시설물
5. 보관장소: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지정한 별도 보관 장소
- 거문도분소 내 유희부지(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346)
6. 문 의 처: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(061-550-0921)
7. 기타사항
 - 가. 회수물품(집기물건 등)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비용 등의 부과·징수 후 반환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회수물품(집기물건 등)은 폐기처분됩니다.

2021. 8. 3.

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